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투자신탁, 증권 (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 02-3707-3400)
4.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lliancebernstein.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성기준일	:	2014년 1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1월 31일
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
8.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각 판매회사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얼라이언스번스틴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는 공동투자펀드(FCP) 형태로 설립되어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투자자총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중요한 의사결정(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보수의 인상 등)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동 기간 동안 환매수수료나 전환수수료의 추가 부담 없이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1)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2)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스틴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이언스번스틴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피투자펀드는 운용자의 판단으로 높은 이익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미국의 우량 대기업의 주식(보통주식, 보통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주식, 보통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표창하는 권리와 워런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피투자펀드는 40-60개 기업에 투자하며 운용자가 높이 평가한 25여개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통상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70%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투자펀드는 순자산의 80% 이상을 그 등록사무소를 미국에 두고 있거나 미국에서 경제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피투자펀드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 펀드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소수의 집중적으로 조사된 회사들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피투자펀드는 소형주 투자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운용자의 견해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투자펀드는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 우량 채권과 사채, 우선주, 미국 정부가 발행, 창출하거나 완전 보증하는 증권과 같은 여타 종류의 유가증권 및 은행인수 어음, 국내 예금증서, 기타 만기가 1년 미만인 부채증서와 같은 기타 우량 단기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은 보조 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는 전문 우량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자는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가중평균 시가총액(즉, 투자대상 회사들의 기발행 주식수에 1좌당 주가를 곱한 금액)이 배당금과 이익금의 재투자를 반영하기 위한 월별 조정분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선별된 주식 포트폴리오의 총성과를 기초로 하는 시장 활동에 대한 널리 공인된 지수인 Standard & Poor's 500 Composite Stock Price Index를 구성하는 회사들의 가중평균 시가총액과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투자펀드 투자자산의 분산화 및 높은 우량성이 피투자펀드 자산 가치의 변동을 막을 수는 없을 지라도 이러한 요소들은 투자 위험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투자펀드의 목적 달성에 공헌합니다. 단기 거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거래를 실행하는 것은 피투자펀드의 방침이 아닙니다.

피투자펀드는 잠정적인 방어 수단으로써 자산의 일부분을 미국 국채 증권 및 기타 단기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본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발행인이 발행한 미국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여 피투자펀드 총자산의 15%까지를 미국외 발행회사의 주식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해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비교 지수 : S&P 500 Index (원화 해지 100%)

3.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 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해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위험	투자신탁이 소규모 시장을 가진 비유동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 자산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치, 기준 금리 또는 지수에 의하여 또는 이와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주식 위험	투자신탁의 기초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는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또는 일반 시장과 경제상황,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때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장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 위험	투자신탁의 채무증권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 및 통화 환율 변동에 따라, 그리고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변동합니다. 투자신탁은 고수익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가차하락 및 자본손실 실현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을 지니거나,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그에 상당하는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은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보다 수익률과 시가 측면에서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일반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을,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충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봉쇄,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 포트폴리오 위험	대부분의 다른 펀드보다 제한된 수의 회사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유가증권 가치 변동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위험을 지닙니다.

3)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면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발행인의 주식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위험 5등급 중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주식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선호도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들은 본 투자신탁에의 투자적합성에 관하여 독립 재정 자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3.12.31.현재)		주요 경력
			기타 운용 중인 펀드	기타 운용중인 자산	
유재홍	1970	상무/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8개	약 15,054억원	- 연세대학교 MBA <u>경력:</u> -신한금융투자 FICC운용2팀장 (2010.5 ~2011.12) - KD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해외투자팀장 (2009.5~2010.5)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08.5~2009.5)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채권운용팀 (2002.7~2008.5)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12.01.01~12.12.31)	최근 2년차 (11.01.01~11.12.31)	최근 3년차** (10.03.29~10.12.31)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Class A	15.36	-2.24	6.85		
Class C1	14.58	-2.93	6.13		
Class C2	14.85	-11.18			
Class C3	0.92				
Class C-e	15.14	-2.43	6.65		
Class I	16.24	-1.48	7.64		
투자신탁전체	15.30	-2.29	6.78		
비교지수*	15.72	3.54	11.64		

* 비교지수: S&P 500 Inde(원화해지 100%)

** 2010.3.29~2010.12.31 기간 동안의 수익률임.

주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이며 종류별로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II. 매입·판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I	종류 C-P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입시
판매수수 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 금의 70%	90일 미만: 이익 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판매시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판매 청구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판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순자산총액기준)

구 분	지급비율 (연 %)								비 고 (지급 시기)	
	종 류	A	C1	C2	C3	C4	C-e	I	C-P	
보 수	집합투자 업자 보수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800%	1.500%	1.250%	0.999%	0.800%	0.990%	0.030%	0.850%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소계	0.965%	1.665%	1.415%	1.164%	0.965%	1.155%	0.195%	1.015%		
기타비용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사유 발생 시	
총보수·비용 비율	0.981%	1.681%	1.431%	1.180%	0.981%	1.171%	0.211%	1.031%		
합성 총보수·비 용 비율 (피투자 펀드 총보수·비용 포 함)	1.791%	2.491%	2.241%	1.990%	1.791%	1.981%	1.021%	1.841%		
증권거래비용	-	-	-	-	-	-	-	-	사유 발생 시	

주 1)기타 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비율을 주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들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에서 부과하는 총 보수·비용은 약 연 0.81 %

(피투자 펀드 운용보수 연 0.70% 포함)입니다. 피투자펀드의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피투자펀드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및 피투자펀드의 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투자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1 수익증권의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나(종류 C1수익증권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함)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 분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8	409	642	1,3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79	664	1,089	2,352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448	681	1,3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49	704	1,129	2,391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369	647	1,4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98	624	1,094	2,491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	66	116	2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02	322	564	1,284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325	569	1,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84	580	1,017	2,315

*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함

* 종류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로 가정하여 산정함.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수익증권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I 수익증권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판매회사의 종합 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
종류 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 ⑤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boxed{\text{외국납부세액}} \times \boxed{\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 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 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 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lliancebernstein.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절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17 시) 이전	오후 5시(17 시) 경과 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p>

III. 요약 재무정보

재 무 상 태 표

제 4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3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단위: 원)

과 목	제 4 (당)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3 (전)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금 액	금 액
I. 운용자산		
1. 현금 및 예치금	(10,210,863,908)	(29,773,775,009)
2. 유가증권	505,953,109	1,210,895,789
3. 파생상품	9,618,919,312	28,562,879,220
	85,991,487	–
II. 기타자산	(391,330,947)	(2,152,186)
자산총계	10,602,194,855	29,775,927,195
I. 운용부채		
II. 기타부채	(1,874,322)	(554,474,986)
	(1,563,573,334)	(78,342,985)
부채총계	1,565,447,656	632,817,971
I. 원자본		
II. 결손금	9,036,747,199	29,838,807,724
		(695,698,500)
자본총계	9,036,747,199	29,143,109,224
부채와자본총계	10,602,194,855	29,775,927,195
I. 운용수익		
1. 투자수익	4,557,241,222	(2,880,582,131)
2.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14,836,079)	(32,340,719)
3.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7,541,509,432)	(6,092,459,237)
	(2,999,104,289)	(9,005,382,087)
II. 운용비용	195,718,426	333,908,929
1. 운용수수료	18,903,366	32,118,757
2. 판매수수료	161,048,482	274,321,061
3. 수탁수수료	7,561,339	12,847,500
4. 사무수탁수수료	5,292,932	8,993,248
5. 기타비용	2,912,307	5,628,363
III. 당기순이익	4,361,522,796	(3,214,491,060)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에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게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结취선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확인사항을 읽고 고객기재사항에 있는 내용을 자필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에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 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